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남부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최현철

전화 02-3219-4420/팩스 02-3219-2397

보도자료
2025. 1. 3.(금)

최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 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●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(단장 박건욱)은 금융위·금감원에서 Fast Track(긴급조치 통보)으로 이첩받은 **최초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**을 수사하여 D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대량의 코인 판매를 위탁 받은 후 시세조종을 통해 코인을 매각한 시세조종업자 등 2명을 구속 기소하였음

- 피고인들은 D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대량의 코인을 제공받은 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'자동매매 프로그램'을 이용하여 △ **시장가로 매수·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**(거래량 증가), △ 직전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**체결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즉시 취소**하는 방식으로 **허수매수주문을 제출**(매수세 유입 가장)하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약 71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음

※ A의 33억 원 상당 아파트 임차보증금 및 35억 원 상당 가상자산 등에 대하여 신속히 **범죄수익 환수 조치**하였음

- 검찰은 금융위·금감원으로부터 Fast Track(긴급조치 통보)으로 사건을 신속히 이첩받은 후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속·정확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음
- 앞으로도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**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**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세조종 등 **불공정거래행위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**하겠음

1

사건 개요

가. 피고인 및 피의자

	피고인 및 피의자	당시 지위 및 역할	처분
1	A (33세, 구속)	코인사업 운용업체 F* 대표 (*코인 개발·상장·유동성 공급·마케팅 대행 등 코인사업 전반을 수행)	1. 3. 구속기소
2	B (28세, 구속)	코인사업 운용업체 F 前 직원	1. 3. 구속기소
3	C (42세, 불구속)	가상자산 위탁판매 알선 브로커	1. 3. 기소중지

나. 공소사실 요지

- '24. 7. 22.~10. 25. E거래소에서 D코인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장가 매수·매도주문 및 허수매수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코인 약 122만 개를 매도 하고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**[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]**

※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 : 2024. 7. 19.

다. 수사 경과

- '24. 10. 25. 금융위·금감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*으로 사건 이첩

* 혐의자의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이첩하는 제도

- '24. 10. 30.~31. A, C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
- '24. 11. 15. B 주거지 압수수색
- '24. 12. 16. C 체포영장 발부(10. 29. 국외 출국)
- '24. 12. 18. A, B 구속영장 발부(12. 16. 청구)

2

수사 배경

- E거래소는 A의 D코인에 대한 거래량이 폭증한 사실 확인하여 금감원에 이상 거래 통보하였고, 금감원은 A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후 신속한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성 인정하여 패스트트랙 절차로 검찰에 사건 이첩하여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음

3

수사 결과

가. D 코인의 위탁판매

- A는 '24. 7.경 가상자산 발행재단과 위탁판매업자 등을 연결해주는 브로커 C를 통해 D코인의 발행재단과 D코인 약 201만 개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
- A가 E거래소에서 위탁판매하는 D코인 판매대금의 55%는 발행재단, 45%는 A와 C가 분배받는 조건(A와 C 사이에는 5:5 비율로 분배)
- C는 A에게 E거래소에서 D코인의 시세를 상승시키고 위탁받은 물량을 판매할 것을 요청하고 A는 이를 수락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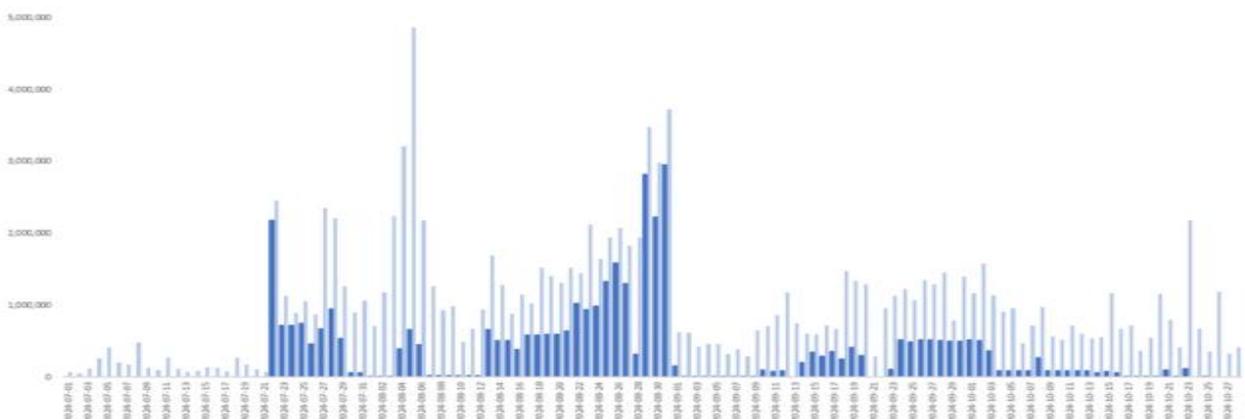
나. 이 사건 시세조종범행 방법

- A는 가상자산 발행재단들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코인을 고가에 팔아 수익을 취하는 시세조종업자이고, B는 F업체의 前 직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시세조종 거래주문을 제출한 실행행위자임

(1) 거래량 부풀리기 위한 주문

- 소량의 D코인을 시장가로 매수 및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 함으로써 D코인의 E거래소 내 거래량, 거래횟수를 늘려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D코인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오인케 함
- '24. 7. 1부터 범행 개시 전날인 '24. 7. 21.까지 E거래소의 D코인 일평균 거래량은 약 16만 개였으나, 시세조종 범행이 개시된 7. 22. 거래량이 약 245만 개로 하루 만에 약 15배 급증하였고, 7. 22. A의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약 89%를 차지함

본건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E거래소의 D코인 거래량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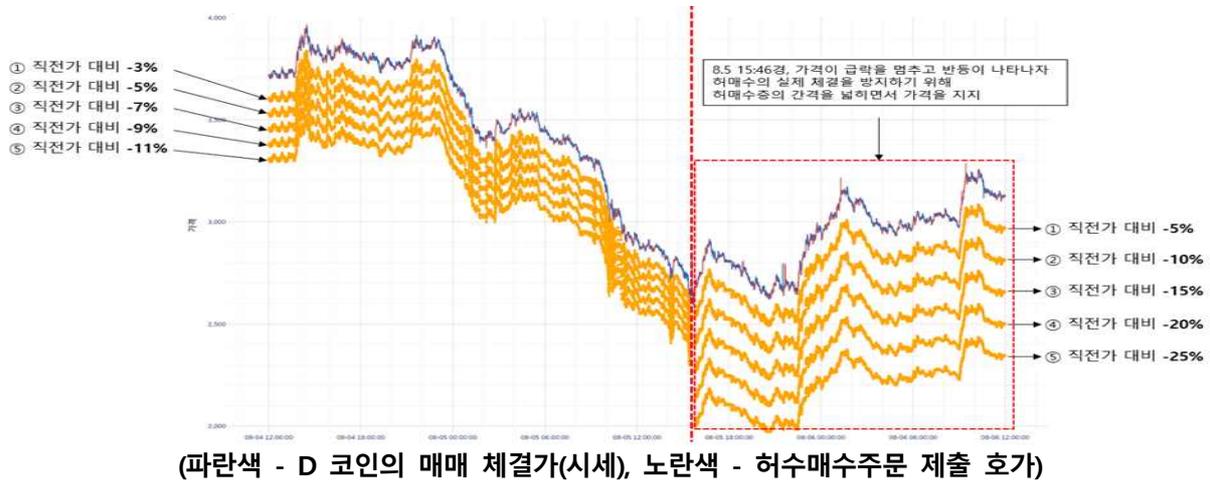


(진한 파란색 - 피고인들의 거래량, 열은 파란색 - 거래소 내 전체 거래량)

(2) 매수주문량 가장하기 위한 주문

- 자동주문프로그램을 통해 D코인의 시세 변동에 정확히 맞춰 직전체결가 대비 3% ~ 11% 또는 5% ~ 25% 낮은 가격(체결가 대비 일정비율 낮은 5단계)으로 매수 주문을 제출하였다가 체결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즉시 취소한 다음 다시 같은 방식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실제 매매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채 마치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함
- 본건 허수매수주문은 거의 100% 취소되었고, 시세조종 범행기간 E거래소의 D코인 전체 매수주문량의 약 80~90%를 차지함

E 거래소의 D 코인 시세 및 허수매수주문 제출 호가 변동



다. 부당이득(범죄수익) 환수

- 피고인들은 D코인에 대한 이 사건 시세조종범행을 통해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함(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)
- 범죄수익 환수 조치
 - A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 원, E거래소 A의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약 35억 원의 D코인 등 재산에 대하여 신속히 범죄수익 환수 조치(추정보전)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였음

4 향후 계획

-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'24. 7. 19.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추어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(미공개정보이용, 시세조종, 사기적부정거래) 범죄에 대해 더욱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겠음 ☑